

### 3. 國土利用管理法施行規則中改正令

建設交通部令 第41號 1995. 11. 25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4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5호(중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농어촌산업지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구를 대상으로 하되,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한다.

가. 토질·경사도·수리시설 등을 고려하여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지와 산림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로서 농어촌휴양지 등 농어촌관련시설과 2차 또는 3차 산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구

나. 산림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로서 동법시행령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임업공단 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로서 지정·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5. 시설용지지구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폐기물처리시설 및 기타시설의 입지를 대상으로 하되,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한다.

제2조의 6 제1호를 삭제한다.

제2조의 12 제1호 단서중 “지적”을 “면적”으로, “축척 6천분의 1 임야도”를 “임야도등본”으로 한다.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시설·건축물 등의 위치변경
2. 개발계획범위안에서 개발용도로 정하여진 토지이용계획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3.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8조 본문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획정 또는 설치한 지역·지구·구획 등이 해제됨에 따라 당해 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변경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및 공용건축물의 입지에 적정하게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변경

제7조의 4 본문·제12조 제3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본문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 3 및 제39조 본문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 2 본문중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37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중 “관광휴양”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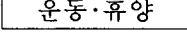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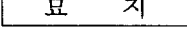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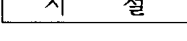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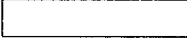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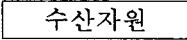
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의 2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 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국토이용계획도상의 용도지역별 채색기준(제2조의 12 관련)

용도지역 및 지구	채 색 기 준
도 시 지 역	 빨강색
준 도 시 지 역 • 취락지구 • 농어촌산업지구 • 운동·휴양지구 • 집단묘지지구 • 시설용지지구	 보라색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도시지역으로 채색후 고무인</li> <li>• 규격                -가로 2.0cm, 세로 0.8cm</li> <li>-글씨 : 명조체</li> </ul> </div> </div>
농 립 지 역	 초록색
준 농 립 지 역	 노랑색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 수산자원보전지구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    </div> <div> <p>바탕색 : 무색 선 : 초록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채색후 고무인</li> <li>• 규격                -가로 2.0cm, 세로 0.8cm</li> <li>-글씨체 : 명조체</li> </ul> </div> </div>

신청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처리기간
1, 2, 3, 4, 5, 6, 7, 8		※ 굵은 선안에만 기재하기 바랍니다. ※ 신청사항란은 아래의 1~8항목을 참조하여 표시하십시오.					1일
신청인		성명	주소				
대상지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sup>2</sup> )
		시·군·구	읍·면	리·동			
확 인 내 용	1	국토이용	용도지역	(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개발계획등의수립여부				
	2	도시계획	용도지역	(전용·일반·준) 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 상업지역 (전용·일반·준) 공업지역 (보전·생산·자연) 녹지지역			
			용도지구	풍치·주차장정비·미관(1, 2, 3, 4, 5종)·아파트·고도(최저·최고)·기타( )			
			도시계획시설	도로(저축·접함)·공원·기타( )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일단의(주택지·공업용지) 조성·재개발·시가지조성			
			구역	개발제한구역(내·저축)·기타( )			
			도시계획입안사항				
	3	군사시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없음
4	농지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해당없음	
5	산림	보전임지				해당없음	
6	자연공원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해당없음	
7	수도	상수원보호구역				해당없음	
8	토지거래	허가구역·신고구역				해당없음	
	기타						
귀하의 신청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사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구청장 인						수수료	
						뒷면참조	

※ 참고사항

가. 이 확인원은 1필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사항입니다.

나. 부동산의 근본적인 재산가치에 영향이 미치는 각종 개별법상의 주요 제한사항을 망라하였으나, 전면 기재사항이 모든 법규를 수용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토지이용계획확인도면은 원칙적으로 생략하며,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확인도면만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라. 1의 국토이용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300원, 2의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700원, 3 내지 8의 사항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200원의 수입증지를 붙이시고, 둘이상의 항목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의 각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확인도면〉

## ◇개정이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9호)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농어촌산업지구는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지와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지정하도록 함(제2조의 4 제1항 제2호).
- 나.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에 설치하는 시설은 15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하게 한 면적제한을 철폐함(제2조의 4 제1항 제5호).
- 다. 준도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중 시설·건축물의 위치변경, 토지이용계획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은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 2).
- 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한 지역·지구 등이 해제되어 당해 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공공시설의 입지에 적정한 용도지역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제38조).

〈건설교통부 제공〉